

■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5]

감독관의 자격기준(제12조 관련)

분야	자격기준
1. 합정	<p>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</p> <p>가. 조선 설계·건조·수리·검사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</p> <p>나. 「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」 제16조 제3항제1호에 따라 특수기술부문 중 조선기술부문의 경력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된 사람</p> <p>다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에서 조선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</p> <p>라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에서 조선 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조선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</p>
2. 항공기	<p>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</p> <p>가. 항공기 제작·구매·수리·검사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</p> <p>나. 항공기 제작사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항공기 제작·수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</p> <p>다. 항공기 제작사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항공기 공정 검사 분야에서 2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</p>